

사용료 반환 청구서

신청인	주 소	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.		
신청인 단체명	Tc lock	전화	사무실	자 택
성명 (대표자)	허성근		사업자등록번호	
사용 목적	축구장			
예약된 사용시설	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.			
사용료기납부액	180,000			
반환청구액	180,000			
반환청구사유	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.			
<p>■ 개인정보 수집목적 : 대관 신청, 변경, 환불 / 고지사항 전달 / 고객만족도 조사 / 과천시 감사자료 제공</p> <p>■ 개인정보 수집항목 : 성명, 연락처, 주소</p> <p>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, 5년 후 해당정보 파기(소각)합니다.</p> <p>■ 개인정보 제공 :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과천시청에 제공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개인 정보는 파기 됩니다.</p> <p>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할 경우 사용료 반환 청구가 불가합니다.</p> 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동의안함</p>				
<p>과천시시민회관운영 및 사용에 관한조례 제11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.</p> <p>2020년 12월 15일</p> <p>청 구 자 : 허성근 </p> <p>위 사실을 확인함</p> <p>20 년 월 일</p> <p>정수관 : 성명 : (인)</p> <p>과천도시공사사장 귀하</p>				